

원금  
손실가능  
상품


# 퇴직연금 금융투자상품 상품설명서 (핵심/요약)

-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 본 설명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간이)투자설명서, 운용자산설명서와 별도로 하나은행에서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운용자산설명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설명의무 이행 확인

투자자에게 설명 드린 상품의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판매직원	(인/서명)
상품설명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투자자	(인/서명)
	대리인	(인/서명) (인/서명)

## 1. 가입 상품 주요 정보

금융투자상품명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	최대 손실 가능 금액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 및 과거 3년간 자산가치 변동성에 따라 분류됩니다. ※ 2.위험등급 의미 및 유의사항 참고
	<b>원금 전액</b>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자산운용사 또는 증권사가 작성하고 판매직원이 제공한 (간이)투자 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 (1)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위험등급	적정 투자성향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투자자산 기준	변동성 기준	
매우높은 위험(1등급)	공격투자형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단, 최대 손실률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5% 초과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높은위험 (2등급)		①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5% 이하	
다소높은 위험 (3등급)	적극투자형	① 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④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사, 보험사가 발행하는 조건부 자본증권 ⑤ 회사채(BBB+~BBB-등급) 및 기업어음/단기채(A3등급)	15%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통위험 (4등급)	위험중립형	① 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④ 수익구조상 원금 보존추구형 파생결합사채 또는 증권(발행사 등급: A+~A-등급) ⑤ 회사채(A-등급 이상) 및 기업어음/단기채(A1~A2등급)	10%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낮은위험 (5등급)	안정추구형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 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④ 수익구조상 원금 보존추구형 파생결합사채 또는 증권(발행사 등급: AA-등급 이상) ⑤ 특수채, 금융채, RP(기간물) 등 채권	5%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매우낮은 위험 (6등급)	안정형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④ 국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등 채권	0.5%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손실발생율이 낮으나 금융투자상품이므로 원금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퇴직연금 금융투자상품 상품설명서 (핵심/요약)

## (2) 포트폴리오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 포트폴리오 유형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상품의 투자위험도를 구성 비율로 가중 평균한 위험도 점수로 분류합니다.

① 개별 금융투자상품 투자 위험등급에 따른 위험도 점수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6.0	5.0	4.0	3.0	2.0	1.0

② 위험도 점수에 따른 포트폴리오 유형 분류 기준

포트폴리오 위험등급	초고위험 (1등급)	고위험 (2등급)	중위험 (3등급)	저위험 (4등급)	초저위험 (5등급)
적정 투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위험도 점수	6.0 이하	4.5 이하	3.5 이하	2.5 이하	1.9 이하

## 3.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금융투자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서 정의하는 「투자성 상품」에 해당합니다.

예금성 상품 (예.적금)과 구별되는 특징	
원금 비보장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본손실위험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발생가능	선취수수료가 있는 경우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수발생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가 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해지시 불이익	해지 당시의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므로 투자원본보다 작아질 수도 있으며 환매수수료가 있는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대상별 분류]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MMF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또는 증권관련 파생상품에 투자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	운용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관련 규정 제한 없이 투자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 집합투자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

## 4. 투자자 권리 보호 안내 및 FAQ

구분	내용													
<p>숙려 제도 및 숙려 확인콜제도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인 일반투자자의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투자성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신규 익명영업부터 2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3영업일에 최종적으로 계약체결 의사를 확인합니다.</li> <li>계약체결 의사확인인 청약 시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통화 또는 알림톡(SMS)으로 이루어지고 확인 당일 17시까지 청약 확정 의사표시를 하셔야 하며, 청약확정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청약은 자동 취소되고 투자원금 및 운용수익은 연결 계좌로 입금됩니다.</li> </ul>													
<p>청약 철회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인 일반금융소비자는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숙려의사 확인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법인인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전자적 의사표시, 전화 및 우편/팩스 발송 후 전화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 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은행이 받은 금전, 재화 등은 반환 됩니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청약 철회권 행사 유형</th> <th colspan="2">고난도 금융투자상품</th> </tr> <tr> <th>(모집기간 있는 경우)</th> <th>(모집기간 없는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일반금융소비자</td> <td>개인 (숙려 대상)</td> <td>숙려의사 확인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td> <td>청약 철회권 대상 아님</td> </tr> <tr> <td>법인 (숙려 비대상)</td> <td>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다음날부터 7일 이내</td> <td>청약 철회권 대상 아님</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금융소비자가 신규 과정에서 '예탁한 금전 등을 즉시 운용하는데 동의' 하면 위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li> <li>※ 주의 : 청약철회권 행사는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7일째인 설정일 전 영업일 17시까지 가능하며, 대기시간 및 전산 조작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청약철회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단, 외화로 투자되는 펀드 상품은 16시까지]</li> </ul>	청약 철회권 행사 유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모집기간 있는 경우)	(모집기간 없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숙려 대상)	숙려의사 확인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권 대상 아님	법인 (숙려 비대상)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권 대상 아님
청약 철회권 행사 유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모집기간 있는 경우)	(모집기간 없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숙려 대상)	숙려의사 확인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권 대상 아님											
	법인 (숙려 비대상)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권 대상 아님											



# 퇴직연금 금융투자상품 상품설명서 (핵심/요약)

구분	내용
자료 열람 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li> </ul> </li> <li>●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li> </ul>
위법계약 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li> </ul>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상품은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에서 판매를 주관하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li> <li>●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 및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i> </ul>
민원·상담이 반복하여 속지가 필요한 사항	<p><b>펀드</b></p> <p><b>Q1. 펀드를 가입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느냐?</b> 펀드의 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관여하게 되며 이러한 기관별로 보수 및 수수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수수료는 고객이 입금 시 차감되어 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판매보수, 운용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은 투자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순자산총액 산출 시 차감되는 비용입니다.</p> <p><b>Q2. 펀드의 신규·매입·환매의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가?</b> 펀드의 신규, 매입, 환매의 취소 가능한 시간은 개별 펀드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취소 가능한 시간이 지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하며 '폐쇄형'으로 설정된 펀드의 경우 환매가 제한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b>Q3. 펀드의 결산, 재투자는 무엇인가?</b> 결산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계산하여 이익금과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설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매년 실시하게 되며, 펀드별로 결산일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익금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세금 등을 공제 하고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이익분배금이라고하며,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다시 매입하는 것을 재투자라고 합니다. 이익금 중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매매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환매시까지 유보하게 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결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p>
	<p><b>ETF</b></p> <p><b>Q1. ETF 당일매매의 거래 시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b> ETF 당일매매의 주문가능시간은 한국거래소 매매거래일의 9시 ~ 14시 40분(단, 14시 30분까지 ETF 당일매매 메뉴 진입 가능)입니다. 매년 첫 영업일, 근로자의 날, 수능일, 임시 공휴일, 매년 마지막 영업일 등에는 거래시간이 변경되거나 거래되지 않습니다. ETF 당일매매 거래를 통해 주문 완료 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ETF 당일매매 주문처리는 9시 30분 ~ 14시 45분까지 15분마다 한번씩 일괄로 처리되며, 처리된 주문은 장중 분할매매 됩니다. 경우에 따라 거래의 일부만 체결되거나 전체가 체결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TF 당일매매로 매수 시 현금성자산에 한하여 주문가능하며, ETF 당일매매로 매도 시 D+1영업일에 다른 ETF 매수는 가능하나 ETF 이외의 상품을 매수하는 경우 D+2영업일(매도한 ETF의 결제대금 입금 후)에 현재운용상품변경 거래로 변경하여야 합니다.</p> <p><b>Q2. 현재운용상품변경 거래를 통한 ETF 매매 시 거래 시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b> 현재운용상품변경 거래를 통한 ETF 매매 시 24시간 거래 가능합니다. 단 매매 신청 시 거래체결일이 다음 영업일로顺延되어 매매(D+1영업일 체결, D+3영업일 자금 결제) 됩니다. ETF 체결가격과 수량은 매매신청일(D일)의 익영업일(D+1영업일)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거래의 일부만 체결되거나 전체가 체결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유상품변경 거래를 통한 ETF 매도(D일) 후 다른 ETF를 매수하는 경우 D+1 영업일에 가능하나, ETF의 상품을 매수하는 경우 D+4영업일에 거래 가능 합니다.</p> <p><b>Q3. 기타 ETF 거래 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느냐?</b> 상품 매매 시 수량(좌수) 기준으로 거래되며, 미체결된 금액은 현금성(대기) 자산으로 반영됩니다. 기존 상품을 매도하고 ETF를 매수하는 경우 기존 상품의 매도 소요일에 따라 ETF의 매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퇴직/계약이전, 해지 등) 거래 중 보유하신 ETF의 분배금이 발생할 경우 예정된 지급일 보다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p>



# 퇴직연금 금융투자상품 상품설명서 (핵심/요약)

## 5. 상품 설명 안내

구분	내용
기대수익	● 금융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향후 시장상황 및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대수익의 제시가 불가능합니다. 단, ELB, 기업어음, ELF(DLF), 목표전환형 펀드 등의 경우에는 수익구조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수익이 확정될 수 있음
손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손실 추정액	● 금융투자상품은 편입자산의 시가평가에 따라 원금의 0% ~ 100% (원금 전액)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 투자설명서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항목 등 참고 ● 해외 자산에 투자되는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보수	● 펀드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 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항목 참고
계약종료 요건	● ELB, 기업어음, ELF(DLF), 목표전환형 펀드 등과 같이 계약상 만기가 있는 상품들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 계약 종료 요건은 투자설명서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항목 참고
목표시장 설정 근거	● 목표시장은 고객 유형, 지식과 경험, 위험추구성향, 보유가능기간, 손실감내능력, 투자목적에 고려한 투자 기간을 감안하여 설정합니다. ● 목표시장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하며 반드시 「고난도 상품 목표시장 및 시나리오 분석결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실 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 손실 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하며 반드시 「고난도 상품 목표시장 및 시나리오 분석 결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 및 해지 (환매)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시 불이익 사항 포함)	<p>입 의 해 지</p> <p>● 펀드를 설정한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펀드)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펀드를 해지할 수 있으며</b> 이 경우 자산운용사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li> <li>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li> <li>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 시점에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li> <li>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li> </ol> <p>※ <b>위의 3,4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소규모 펀드 임의해지)할 수 있으며,</b> 자산운용사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중 처리 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p> <p>● 일부 상품의 상품제조회사(발행인)는 기초자산의 매매불가능 등의 경우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p>
	<p>의 무 해 지</p> <p>● 다음 각 호의 경우 <b>자산운용사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펀드)을 해지하여야 합니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li> <li>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li> <li>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li> <li>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li> <li>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li> </ol> <p>● 일부 상품의 상품제조회사(발행인)는 발행인의 파산 등의 경우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p>
	<p>● 투자자는 위의 임의해지 및 의무해지 발생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하나은행으로부터 <b>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b> 받습니다.</li> <li>② 공제한 금액 및 시장상황에 따라 <b>투자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b> 받을 수 있습니다.</li> </ol> <p>● 투자자의 의사에 따른 만기가 있는 상품의 <b>중도해지 시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b> 상품에 따라 <b>중도환매가 불가</b>할 수 있습니다.</p>



원금  
손실가능  
상품


# 퇴직연금 금융투자상품 상품설명서 (핵심/요약)

-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 본 설명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간이)투자설명서, 운용자산설명서와 별도로 하나은행에서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운용자산설명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설명의무 이행 확인

투자자에게 설명 드린 상품의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판매직원	(인/서명)
상품설명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투자자	(인/서명)
	대리인	(인/서명) (인/서명)

## 1. 가입 상품 주요 정보

금융투자상품명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	최대 손실 가능 금액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 및 과거 3년간 자산가치 변동성에 따라 분류됩니다. ※ 2.위험등급 의미 및 유의사항 참고
	<b>원금 전액</b>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자산운용사 또는 증권사가 작성하고 판매직원이 제공한 (간이)투자 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 (1)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위험등급	적정 투자성향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투자자산 기준	변동성 기준	
매우높은 위험(1등급)	공격투자형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단, 최대 손실률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5% 초과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높은위험 (2등급)		①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5% 이하	
다소높은 위험 (3등급)	적극투자형	① 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④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사, 보험사가 발행하는 조건부 자본증권 ⑤ 회사채(BBB+~BBB-등급) 및 기업어음/단기채(A3등급)	15%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통위험 (4등급)	위험중립형	① 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④ 수익구조상 원금 보존추구형 파생결합사채 또는 증권(발행사 등급: A+~A-등급) ⑤ 회사채(A-등급 이상) 및 기업어음/단기채(A1~A2등급)	10%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낮은위험 (5등급)	안정추구형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 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④ 수익구조상 원금 보존추구형 파생결합사채 또는 증권 (발행사 등급: AA-등급 이상) ⑤ 특수채, 금융채, RP(기간물) 등 채권	5%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매우낮은 위험 (6등급)	안정형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④ 국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등 채권	0.5%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손실발생율이 낮으나 금융투자상품이므로 원금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퇴직연금 금융투자상품 상품설명서 (핵심/요약)

## (2) 포트폴리오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 포트폴리오 유형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상품의 투자위험도를 구성 비율로 가중 평균한 위험도 점수로 분류합니다.

① 개별 금융투자상품 투자 위험등급에 따른 위험도 점수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6.0	5.0	4.0	3.0	2.0	1.0

② 위험도 점수에 따른 포트폴리오 유형 분류 기준

포트폴리오 위험등급	초고위험 (1등급)	고위험 (2등급)	중위험 (3등급)	저위험 (4등급)	초저위험 (5등급)
적정 투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위험도 점수	6.0 이하	4.5 이하	3.5 이하	2.5 이하	1.9 이하

## 3.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금융투자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서 정의하는 「투자성 상품」에 해당합니다.

예금성 상품 (예.적금)과 구별되는 특징	
원금 비보장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본손실위험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발생가능	선취수수료가 있는 경우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수발생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가 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해지시 불이익	해지 당시의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므로 투자원본보다 작아질 수도 있으며 환매수수료가 있는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대상별 분류]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MMF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또는 증권관련 파생상품에 투자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	운용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관련 규정 제한 없이 투자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 집합투자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

## 4. 투자자 권리 보호 안내 및 FAQ

구분	내용													
<p>숙려 제도 및 숙려 확인콜제도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인 일반투자자의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투자성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신규 익명영업일부터 2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3영업일에 최종적으로 계약체결 의사를 확인합니다.</li> <li>계약체결 의사확인온 청약 시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통화 또는 알림톡(SMS)으로 이루어지고 확인 당일 17시까지 청약확정의 의사표시를 하셔야 하며, 청약확정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청약은 자동 취소되고 투자원금 및 운용수익은 연결계좌로 입금됩니다.</li> </ul>													
<p>청약 철회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인 일반금융소비자는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숙려의사 확인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법인인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전자적 의사표시, 전화 및 우편/팩스 발송 후 전화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 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은행이 받은 금전, 재화 등은 반환 됩니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청약 철회권 행사 유형</th> <th colspan="2">고난도 금융투자상품</th> </tr> <tr> <th>(모집기간 있는 경우)</th> <th>(모집기간 없는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일반금융소비자</td> <td>개인 (숙려 대상)</td> <td>숙려의사 확인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td> <td>청약 철회권 대상 아님</td> </tr> <tr> <td>법인 (숙려 비대상)</td> <td>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다음날부터 7일 이내</td> <td>청약 철회권 대상 아님</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금융소비자가 신규 과정에서 '예탁한 금전 등을 즉시 운용하는데 동의' 하면 위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 : 청약철회권 행사는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7일째인 설정일 전 영업일 17시까지 가능하며, 대기시간 및 전산 조작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청약철회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단, 외화로 투자되는 펀드 상품은 16시까지]</li> </ul> </li> </ul>	청약 철회권 행사 유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모집기간 있는 경우)	(모집기간 없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숙려 대상)	숙려의사 확인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권 대상 아님	법인 (숙려 비대상)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권 대상 아님
청약 철회권 행사 유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모집기간 있는 경우)	(모집기간 없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숙려 대상)	숙려의사 확인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권 대상 아님											
	법인 (숙려 비대상)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권 대상 아님											



# 퇴직연금 금융투자상품 상품설명서 (핵심/요약)

구분	내용
자료 열람 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li> </ul> </li> <li>●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li> </ul>
위법계약 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li> </ul>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상품은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에서 판매를 주관하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li> <li>●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 및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i> </ul>
민원.상담이 반복하여 속지가 필요한 사항	<p><b>펀드</b></p> <p><b>Q1. 펀드를 가입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느냐?</b> 펀드의 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관여하게 되며 이러한 기관별로 보수 및 수수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수수료는 고객이 입금 시 차감되어 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판매보수, 운용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은 투자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순자산총액 산출 시 차감되는 비용입니다.</p> <p><b>Q2. 펀드의 신규·매입·환매의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가?</b> 펀드의 신규, 매입, 환매의 취소 가능한 시간은 개별 펀드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취소 가능한 시간이 지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하며 '폐쇄형'으로 설정된 펀드의 경우 환매가 제한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b>Q3. 펀드의 결산, 재투자는 무엇인가?</b> 결산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계산하여 이익금과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설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매년 실시하게 되며, 펀드별로 결산일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익금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세금 등을 공제 하고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이익분배금이라고하며,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다시 매입하는 것을 재투자라고 합니다. 이익금 중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매매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환매시까지 유보하게 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결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p>
	<p><b>ETF</b></p> <p><b>Q1. ETF 당일매매의 거래 시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b> ETF 당일매매의 주문가능시간은 한국거래소 매매거래일의 9시 ~ 14시 40분(단, 14시 30분까지 ETF 당일매매 메뉴 진입 가능)입니다. 매년 첫 영업일, 근로자의 날, 수능일, 임시 공휴일, 매년 마지막 영업일 등에는 거래시간이 변경되거나 거래되지 않습니다. ETF 당일매매 거래를 통해 주문 완료 후 취소는 불가능 합니다. ETF 당일매매 주문처리는 9시 30분 ~ 14시 45분까지 15분마다 한번씩 일괄로 처리되며, 처리된 주문은 장중 분할매매 됩니다. 경우에 따라 거래의 일부만 체결되거나 전체가 체결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TF 당일매매로 매수 시 현금성자산에 한하여 주문가능하며, ETF 당일매매로 매도 시 D+1영업일에 다른 ETF 매수는 가능하나 ETF 이외의 상품을 매수하는 경우 D+2영업일(매도한 ETF의 결제대금 입금 후)에 현재운용상품변경 거래로 변경하여야 합니다.</p> <p><b>Q2. 현재운용상품변경 거래를 통한 ETF 매매 시 거래 시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b> 현재운용상품변경 거래를 통한 ETF 매매 시 24시간 거래 가능합니다. 단 매매 신청 시 거래체결일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어 매매(D+1영업일 체결, D+3영업일 자금 결제) 됩니다. ETF 체결가격과 수량은 매매신청일(D일)의 익영업일(D+1영업일)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거래의 일부만 체결되거나 전체가 체결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유상품변경 거래를 통한 ETF 매도(D일) 후 다른 ETF를 매수하는 경우 D+1 영업일에 가능하나, ETF외 상품을 매수하는 경우 D+4영업일에 거래 가능 합니다.</p> <p><b>Q3. 기타 ETF 거래 시 속지해야 할 사항이 있느냐?</b> 상품 매매 시 수량(좌수) 기준으로 거래되며, 미체결된 금액은 현금성(대기) 자산으로 반영됩니다. 기존 상품을 매도하고 ETF를 매수하는 경우 기존 상품의 매도 소요일에 따라 ETF의 매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퇴직/계약이전, 해지 등) 거래 중 보유하신 ETF의 분배금이 발생할 경우 예정된 지급일 보다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p>



# 퇴직연금 금융투자상품 상품설명서 (핵심/요약)

## 5. 상품 설명 안내

구분	내용
기대수익	● 금융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향후 시장상황 및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대수익의 제시가 불가능합니다. 단, ELB, 기업어음, ELF(DLF), 목표전환형 펀드 등의 경우에는 수익구조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수익이 확정될 수 있음
손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손실 추정액	● 금융투자상품은 편입자산의 시가평가에 따라 원금의 0% ~ 100% (원금 전액)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 투자설명서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항목 등 참고 ● 해외 자산에 투자되는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보수	● 펀드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 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항목 참고
계약종료 요건	● ELB, 기업어음, ELF(DLF), 목표전환형 펀드 등과 같이 계약상 만기가 있는 상품들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 계약 종료 요건은 투자설명서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항목 참고
목표시장 설정 근거	● 목표시장은 고객 유형, 지식과 경험, 위험추구성향, 보유가능기간, 손실감내능력, 투자목적에 고려한 투자 기간을 감안하여 설정합니다. ● 목표시장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하며 반드시 「고난도 상품 목표시장 및 시나리오 분석결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실 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 손실 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하며 반드시 「고난도 상품 목표시장 및 시나리오 분석 결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 및 해지 (환매)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시 불이익 사항 포함)	<p><b>임의해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를 설정한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펀드)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펀드를 해지할 수 있으며</b> 이 경우 자산운용사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li> <li>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li> <li>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 시점에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li> <li>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li> </ul> </li> <li>※ <b>위의 3,4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소규모 펀드 임의해지)할 수 있으며,</b> 자산운용사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중 처리 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li> <li>● 일부 상품의 상품제조회사(발행인)는 기초자산의 매매불가능 등의 경우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li> </ul>
	<p><b>의무해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각 호의 경우 <b>자산운용사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펀드)을 해지하여야 합니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li> <li>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li> <li>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li> <li>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li> <li>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li> </ul> </li> <li>● 일부 상품의 상품제조회사(발행인)는 발행인의 파산 등의 경우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는 위의 임의해지 및 의무해지 발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하나은행으로부터 <b>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b> 받습니다.</li> <li>② 공제한 금액 및 시장상황에 따라 <b>투자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b>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li> <li>● 투자자의 의사에 따른 만기가 있는 상품의 <b>중도해지 시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b> 상품에 따라 <b>중도환매가 불가</b>할 수 있습니다.</li> </ul>

